|  |  |  |
| --- | --- | --- |
| **수입단계소비세 조정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4년 제85호  국무원의 승인하에 수입단계소비세 정책 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기통 용적이 250ML미만인 소배기량 오토바이의 수입단계소비세를 취소한다. 기통 용적이 250ML인 오토바이 및 기통 용적이 250ML이상(250ML 제외)인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각각 3% 및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단계소비세를 징수한다.  2. 자동차 토이어 세목을 취소한다.  3. 자동차용 유연휘발유의 수입단계소비세를 취소한다. 휘발유 세목의 2급세목을 취소하고 일률 무연휘발유로 통합하여 수입단계소비세를 징수한다.  4. 알코올의 수입단계소비세를 취소하고 "술과 알코올" 품목을 "술"로 수정하여 현행 수입단계소비세 정책에 따라 시행한다.  본 공고는 2014년12월1일부터 집행  해관총서  2014년 11월 28일 |  | **关于调整进口环节消费税政策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4年第85号  经国务院批准，现将进口环节消费税政策调整事项公告如下：  一、取消汽缸容量250毫升（不含）以下的小排量摩托车进口环节消费税。气缸容量250毫升和250毫升（不含）以上的摩托车继续分别按3%和10%的税率征收进口环节消费税。  二、取消汽车轮胎税目。  三、取消车用含铅汽油进口环节消费税，汽油税目不再划分二级子目，统一按照无铅汽油税率征收进口环节消费税。  四、取消酒精进口环节消费税，“酒及酒精”品目相应改为“酒”，并继续按现行进口环节消费税政策执行。  本公告自2014年12月1日起执行。  海关总署  2014年11月28 |